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기획재정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에
게 미리 현금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중소기업
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대한 환급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국세환급금
발생일 및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규정에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른
환급을 추가함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○○○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5. 11. ~ 2020. 5. 18.) 결과, 특기할

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제4호 본문 중 “「개별소비세법」 또는 「주세법」”을 “「개별소비세법」, 「주세법」 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”으로 한다.

제43조의3제1항제4호 본문 중 “· 「주세법」 또는 「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」”을 “· 「주세법」· 「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」 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2조(국세환급금 발생일) 법 제 51조제3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 발생일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. 1. ~ 3. (생략) 4. 「소득세법」, 「법인세법」, 「부가가치세법」, 「<u>개별소비세법</u>」 또는 「<u>주세법</u>」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또는 신고한 환급세액의 경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: 그 신고일. 다만,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일로 한다. 5. 6. (생략)	제32조(국세환급금 발생일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「<u>개별소비세법</u>」, 「<u>주세법</u>」 또는 「<u>조세특례제한법</u>」----- ----- -----. 5. 6. (현행과 같음)
제43조의3(국세환급가산금)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. 1. ~ 3. (생략) 4. 「소득세법」·「법인세법」	제43조의3(국세환급가산금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

· 「부가가치세법」 · 「개별 소비세법」 · 「주세법」 또는 「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」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, 결정(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 또는 결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: 신고를 한 날(신고한 날이 법정신고 기일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 신고기일)부터 30일이 지난 날. 다만, 환급세액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음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할 때에는 해당 결정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.	----- · 「주세법」 · 「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」 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-----
5. (생략) ② (생략)	5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	
연 락 처	(044) 215 - 4221